

인천지방법원 부천시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52258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2. 19.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송애순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1.2.18.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1. 14.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과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최승락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2024.05.30.			
한수연	전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인	2020.11.20.~	309,000,000		2020.11.20.	2020.10.19.		
		현황조사	주거 임차인		309,000,000		2020.11.20.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0.11.20.~ 2022.11.19.	309,000,000		2020.11.20.	2020.10.19.	2024.11.14.	
<p><비고> 최승락:한수연과 동거인임. 한수연: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10.25.임</p> <p>※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p> <p>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단, 임차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p> <p>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p>										
비고란										

-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52258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8-3
리치하임2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107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2.3m²
1층 15m²
2층 163.795m²
3층 163.795m²
4층 163.795m²
5층 152.455m²
옥탑1층 17.6m²(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3.27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8-3
대 452.2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52.2분의 39.2425

감정평가액		311,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4.02	17,928,000	1,792,800
2회	2026.05.07	12,550,000	1,255,000
3회	2026.06.11	8,785,000	878,500
4회	2026.07.16	6,150,000	615,000